

#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산불에 대한 예방·진압 등의 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제외하여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,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